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비 상 사 태 등 에 대 비 하 기 위 한 해 운
및 항 만 기 능 유 지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시 해당 항만에서의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해당 조건에 미달되어 계약 체결 현황이 저조한 바, 협약체결 조건 완화를 통해 항만운영협약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규등록업체들은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조건을 선박연

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신규등록업체들의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 3) 개정을 통하여 신규등록업체의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독려하여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 중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을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단,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비 고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 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생략) 나. 선박연료 공급업 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별표 1]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비 고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 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생략) 나. 선박연료 공급업 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단, <u>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u>)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91